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15 발의연월일: 2025. 1. 7.

발 의 자:이학영·김재원·정준호

정태호 • 박정현 • 임호선

김영배 · 문금주 · 이정문

전재수 · 백혜련 · 문정복

의원(12인)

찬 성 자:1인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,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 자를 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, 본회의가 열리 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,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

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73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3(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본회의) ① 제72조, 제73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개의된 것으로 보며 의원들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할 때까지 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부터 직무를 대리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제73조의3(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본회의) ① 제72조, 제73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개의된 것으로보며 의원들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할 때까지 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작무를 대리한다. 이 경우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부터 직무를 대리한다.